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7. . . (제 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경규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원활한 화학물질의 등록을 위하여 등록면제 대상, 제출자료 생략, 개별제출 사유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해가 우려되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규제하는 물질은 별도의 위해성평가 등을 수행하지 않아도 국내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기업이 제출한 정보의 관리 강화 등을 위해 협회의 위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으로 조정하는 등 기존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면제 대상 추가(안 제11조제2항제2호 개정)

현재는 신규화학물질인 단량체가 2%를 초과하여 포함된 고분자화합물(수평균분자량 1만 미만)은 등록대상이나,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어 유해성자료 등이 이미 등록되었고 유해성심사도 받은 신규화학물질을 포함하는 고분자화합물은 등록면제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나.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추가
(안 제13조제6의2호 신설)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여 이를 통해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등록신청시 해당 제출자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추가
(안 제14조제3호 신설)**

개별제출하는 자료를 무상으로 공유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부합하면 개별제출을 할 수 있도록 개정

라.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고시(안 제19조제3항, 제20조제4항 신설)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거나 규제하기로 결정된 화학물질 가운데 국민에게 위해우려가 높고 이미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등은 사회경제성분석서 작성 또는 위해성평가를 하지 않고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

마. 환경부장관이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협회에게 위임·위탁하는 업무의 추가 및 변경(안 제31조제1항제7의2호, 제4항제1의2호, 제4항제2의2호 신설 등)

- 1)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업무 위임
- 2)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한 자에 대한 보고와 검사 업무 위임
- 3) 협회에게 위탁한 업무 가운데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와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등의 업무는 한국환경공단 위탁으로 변경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06. 1. ~ 07.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신규화학물질”을 “신규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로써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되고, 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신규화학물질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3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여 이를 통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제1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별제출하는 자료를 무상으로 공유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6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나노물질(“나노물질”이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100 나노미터인 입자가 수분포로 50% 이상인 물질과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 나노미터 이하인 폴리렌, 그래핀 플레이크 및 탄소

나노튜브를 말한다.)

제17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제1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지정기준에 해당하고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 국민에게 위해우려가 높고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화학물질을 허가물질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성분석서 작성 또는 위해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로, “고려하여야 한다”를 “고려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 국민에게 위해우려가 높고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화학물질을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회경제성분석서 작성 또는 위해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에 관한 업무

제31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제31조제2항제6호 중 “법 제43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를 “법 제43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공단에”를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공단의 이사장에게 신고된 경우만 해당한다)

1의3. 법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

2의2.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또는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공단의 이사장에게 신고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31조제5항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4항 및 제5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면제) ① (생 략)</p> <p>②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면제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p> <p>1. (생 략)</p> <p>2. <u>신규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성·위해성이 있거나</u> 그러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인 단량체가 중량비를 2퍼센트 초과하여 포함된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p> <p>제13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p> <p>1. ~ 6. (생 략)</p>	<p>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면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신규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로써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되고, 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신규화학물질은 제외한다)</u>----- -----</p> <p>제13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 -----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신 설>

7. 8. (생 략)

제14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 (생 략)

<신 설>

제16조(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법 제19조 제1항에서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6의2.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여 이를 통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7. 8. (현행과 같음)

제14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

-----.

1. 2. (현행과 같음)

3. 개별제출하는 자료를 무상으로 공유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6조(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

다음 각 호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1. ~ 7. (생략)

8. 나노물질

제17조(연구기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 5. (생략)

<신설>

6. (생략)

제19조(허가물질의 지정·고시)

①·② (생략)

<신설>

-.

1. ~ 7. (현행과 같음)

8. 나노물질(“나노물질”이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100 나노미터인 입자가 수분포로 50% 이상인 물질과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 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 그래핀 플레이크 및 탄소나노튜브를 말한다.)

제17조(연구기관) -----

-----.

1. ~ 5. (현행과 같음)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19조(허가물질의 지정·고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지정기준에 해당하고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 국민에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허가유예기간(이하 “허가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④ ~ ⑦ (생략)

제20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고시) ① ~ ③ (생략)

<신설>

게 위해우려가 높고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화학물질을 허가물질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성분석서 작성 또는 위해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

경우에 -----
고려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20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고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 국민에게 위해우려가 높고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화학물질을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하려는 경우에

④ (생략)

제22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4. (생략)

<신설>

5. ~ 10. (생략)

제3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 7. (생략)

<신설>

8. ~ 21.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는 사회경제성분석서 작성 또는 위해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2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에 관한 업무

5. ~ 10. (현행과 같음)

제3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8. ~ 21. (현행과 같음)

② -----

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 5. (생략)

6.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
· 검사 등(법 제43조제1항제1
호·제4호·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7.·8. (생략)

③ (생략)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
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생략)

<신설>

<신설>

2. (생략)

<신설>

-----.

1. ~ 5. (현행과 같음)

6. -----

-----법 제43조제1항제1
호·제3호·제4호·제5호---

7.·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한
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
다)에 --.

1. (현행과 같음)

1의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공단의 이사장에
게 신고된 경우만 해당한다)

1의3. 법 제39조에 따른 화학물
질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2. (현행과 같음)

2의2.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
수 또는 자료보호 대상이 아

<p>3. (생략)</p> <p>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p> <p>1. 삭제</p> <p>2. ~ 4. (생략)</p> <p>5. <u>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협회에 신고된 경우만 해당한다)</u></p> <p>6. ~ 8. (생략)</p> <p>9. <u>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또는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협회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u></p> <p>10. (생략)</p>	<p><u>년 자료의 통지(공단의 이사장에게 신고된 경우만 해당한다)</u></p> <p>3. (현행과 같음)</p> <p>⑤ ----- ----- -----.</p> <p>2. ~ 4.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6. ~ 8.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10. (현행과 같음)</p>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화학 물질정책과	
연 락 처	044-201-6783